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9293

발의연월일: 2023. 1. 2.

발 의 자:윤준병·김태년·김승남

민병덕 • 이병훈 • 이개호

최종윤 • 이상헌 • 양정숙

양경숙 • 민형배 • 소병훈

한병도 • 장철민 • 신정훈

김철민 · 김성화 의원
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 등은 다중밀집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 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다중밀집인파사고에 대한 규정의 미비 탓으 로 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.

이에 정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'사회재난'예시의 유형에 '다중밀집인파사고'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호나목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호나목 중 "화생방사고"를 "다중밀집인파사고·화생방사고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	1
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	
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	
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사회재난: 화재・붕괴・폭	나
발 • 교통사고(항공사고 및	
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 <u>화</u>	<u>다</u>
<u>생방사고</u> ·환경오염사고	중밀집인파사고 • 화생방사
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	<u> </u>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	
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	
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	
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	
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	
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	
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	
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	
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	
등으로 인한 피해	
다. (생 략)	다. (현행과 같음)

2.~12. (생 략)

2.~12. (현행과 같음)